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진욱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사(校舍)와 교지를 포함함(안 제9조제4항 제6호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이 은 정)